

당첨 동호수의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을 확인하신 후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납부와 계약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당사 견본주택에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.

■ 계약체결 일정 안내 *예비 입주자의 경우 별도 안내

구분	정당계약 일정	계약 장소
정당계약	2024년 10월01일(화) ~10월04일(금) 4일간 (10:00 ~ 17:00)	당 견본주택

- * 계약체결 전 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당첨유형에 맞는 당첨자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)
- *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*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*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.

■ 계약 체결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발급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			
본인 계약 시	자격검증서류 일체	본인	•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(*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)					
	추가 개별통지서류	본인	•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(개별 통지)					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) (외국국적동포: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)					
	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계약용 (* 본인 발급용에 한함) *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					
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					
	계약금 입금증	본인	•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,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					
	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	본인	• 견본주택 내 비치 (아파트 공급대금+ 발코니 확장 공사비 합산 금액) *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					
인지세(정부수입인지)	본인	•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/2씩 균등 부담(*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)						
		과세 문서 종류	기재 금액	인지세액	계약자 부담	사업주체 부담	해당 타입	
		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	7만5천원	7만5천원	53 / 59 / 74A 5층 이하	
		10억원 초과	35만원	17만5천원	17만5천원	74A 6층 이상 / 74B 전층		
대리인 계약시 (본인 이외)	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포함) 으로 간주하며,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							
	인감증명서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계약 위임용(* 본인 발급용에 한함) •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					
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					
	위임장	본인	• 견본주택에 비치,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					
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)						

- *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4년08월30일) 이후 발행 되어야 함
- *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함

■ 공급대금 /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

구분	입금액	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	금액
아파트 공급대금	계약 시 : 3천만원(전 타입 동일) 30일 이내 : 분양금액의 10% 차액	전북은행	1013-01-5434 165	코리아신탁(주)	3,000 만원
발코니 확장비	계약시 : 타입별 확장금액의 10%	전북은행	1013-01-5434 256	코리아신탁(주)	타입별 금액(10%)

■ 무통장 입금 시 예시 : 101동 1201호 홍길동 → '1011201홍길동' 으로 입금

- *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,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,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.
- *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*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*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,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,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